

수의계약(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055-392-5413)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리마을 외 1개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사업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선리마을 및 대리마을 일원		
공사개요	붙임 설계내역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총 공사예정금액	금493,770,000원	기초금액	금325,820,000원
도급금액	금325,820,000원	추정가격	금296,200,000원
관급금액	금167,950,000원	부가가치세	금29,620,000원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325,82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220,476,330원(67.7%)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105,343,670원(32.3%)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9. (수) 18: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15. (화) 10:00
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9. 15. (화) 11:00, 입찰집행관PC
재입찰 집행	2026. 9. 15. (화) 16: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본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 시에는 **직접 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 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해야함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참고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열람장소: 수도과 수도시설팀(☎055-392-5413)
- 다.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72호, 2026.6.29.)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2,926,336	3,866,508	384,520	1,872,204	6,507,544	12,635,942	2,038,030	30,231,084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각 1부씩)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건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 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이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서식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람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4)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8. 문의처

-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수도과 수도시설팀(☎055-392-5413)
-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수도과 계약담당자(☎055-392-5403)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